

영등포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5.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1호로 2011년 4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및 구민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함.(안 제명)
- 나. 정보화 관련 용어 정의와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구(區) 정보화 사업 심의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 사항과 정보화사업 기술적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 사항 명시함.(안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 바. 정보화자료 안전관리와 정보화자료 제공 수수료 기준 및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격차해소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 아.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시행과 그에 따른 수강료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 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상위 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2009. 5.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구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임.
- 안 제4조와 제5조에 우리구 지역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한 바 이는 우리구 지역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것임.
- 안 제3장 제8조부터 제14조에는 구성인원 15명 이내 임기 2년으로 하여 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장 제15조부터 제26조에는 행정·교육·복지·산업·문화·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 구성근거 조항을 두었으며 이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조치로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장에는 정보화 자료의 관리근거와 제공에 관한 기준, 수수료,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정하고,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이 현행 조례에서는 정보화자료 수수료와 수탁업무처리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정보화수수료부분에서는 인건비를 월평균 보수로하여 계산이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도록 개정한 것이며 서울시의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별 문제점 없음.
- 안 제6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35조에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중인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기증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안 제7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강료 징수·환불 기준과 수강료 감면 대상 규정을 신설한 바 이는 정보격차해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함으로 보여 짐.

- 안 [별표 2]에서 정한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수강료를 살펴보면,

교 육 시 간	수 강 료
10시간 ~ 20시간	10,000원 이하
21시간 ~ 30시간	20,000원 이하
31시간 ~ 60시간	30,000원 이하

1만원이하에서 3만원이하로 정하고 있는 바, 조례개정으로 인한 수강료 인상부분은 없고 수강료 감면 대상은 관련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규정한 바, 별 문제점 없음.

- 최근 정보화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정보화의 기본이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역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구민이 보편적으로 향유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정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통폐합 등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후속 조치사항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그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화교육 수강료 현황

자 치 구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영등포구	10시간~20시간	10,000원	
	21시간~30시간	20,000원	
	31시간~60시간	30,000원	
강동구	10시간~20시간	20,000원	
	21시간~30시간	30,000원	
	31시간~50시간	40,000원	
금천구	10시간~20시간	20,000원	
	21시간~30시간	30,000원	
	31시간~50시간	40,000원	
광진구	10시간~20시간	10,000원	
	21시간~30시간	20,000원	
	31시간~50시간	30,000원	
양천구	1주(10시간)	5,000원	
	2주(20시간)	10,000원	
	3주(30시간)	15,000원	
	4주(40시간)	20,000원	